

第 55 回 安山市議會 安山市保育條例制定을 爲한 公聽會 第 1 號

安山市議會

日時 1996年 12月 20日(金)

場所 議會大會議室

(14時27分 開會)

○司會者 朴鍾遠議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산시 보사환경위원회 박종원의원입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선호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善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먼저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전문가를 비롯한 보육관계자 및 시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안산시에는 시립보육시설이 10개소 1,111명이 민간보육시설 159개소에서 3,437명 등 총 169개소에서 4,548명의 영유아가 보육되고 있고 안산시 인구증가 추세 및 시세 확장을 볼 때 앞으로 계속 보육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동과 여

성의 복지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던 차에 지난 47회 임시회의에 시에서 제출한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과 보육교사 교육비 지원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종전의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과의 마찰이 우려되며 관계 법령과의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위원회에서 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제50회 임시회의 시 대두되었던 안산시 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차 상정하여 심의하던 중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바람직한 조례는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과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 대한 기준과 자격요건을 지역여건과 시재정 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추후 충분히 학계전문가, 주민여론,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실용적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실용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96년도 10월 4일 지방자치시대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정책세미나를 의원세미나실에서 가진 바 있고 이에 대해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의원이 집중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김장훈의원, 노세극의원, 황호명의원이 자진하여 연구 노력한 결과 안산시 보육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안산시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원만히 이루어져 어린이 보육육성과 고급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안산시가 보다 윤택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공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시 보육조례안을 발의한 김장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안에 대한 의문점 또는 문제점 등을 토의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관계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 김연명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신 이찬진변호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이명자 와동어린이집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옥희 수정놀이방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산시 보건사회국장 정득복님을 소개합니다.

안산시의회 김장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원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노세극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웅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황호명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한만

식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변형관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김장훈의원으로부터 보육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章勳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장훈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제안자로서 이 자리에서 있지만 오늘의 공청회가, 그리고 이 조례안이 공동작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년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 보육관계 전문가들, 보사환경위원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안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박선호위원장님 이하 몇분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여섯번에 걸쳐서 이 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할 부분은 조례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단히 얘기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원들이 준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느낀 감정이랄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법률전문가인 이찬진변호사님이 계십니다만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요즘 지방화시대에 민선자치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 방송에서 느끼듯이 중앙의 소식만 쉽게 접할 수 있지 지방의 소식과 우리 안산의 목소리는 잘 들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만큼 지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히

조례란 말의 단어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조례란 게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안산시민 본인의 의사표시로서 준법률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 밑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란 것이 상위법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되는 종합적인 것에 반하여 이 조례라는 것은 자율적인 비록 법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만들어져야 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법에도 얘기되고 있듯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지만 그 반대로 안산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면제하는 권리향상에 있어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지방행정이라고 그럴까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주로 내무부나 도에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라는 게 업무대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정말 안산시에서 필요한 일을 실정에 반영하고 시급한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이렇듯이 조례부분도 역시 이런 내무부에서나 만들어 왔습니다.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지방은 그냥 따라 하는 거였어요. 안산시가 뭐가 필요하고 우선 급한 게 뭔가 거기에 논의되지 않고, 다시 정리하자면 지방행정과 조례라는 것이 내무부나 도에서 만들어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산시 어떤 의견을 반영시

킬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반영할 공간과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해 오면서 이러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방화되는데 있어서 내무부는 가능한 지방에다 권한을 안 줄려고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 의원들, 시민들이 많이 요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조례제정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문제가 세가지로 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이라는 여성 복지증진 측면과 두번째로 안산같은 공단 지역에서 특히 많이 요구되는 여성 노동력 활용의 사회, 경제적 측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제대로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육문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한 부모의 책임만으로 맡겨놓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라는 것이 주민 복리의 실현이라고 할 때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안산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파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안산시 53만 인구에 만6세까지가 약 8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학생 12세까지 하게 되면 인구의 약 2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모까지 합하면 안산시의 복지사업에 핵심적인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조례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앞으로 안산시의 실정에 맞게 또 정치 행정적 여건의 변화, 집행부 몇몇 사람에 의해 좌우됨이 없이 지속

적이고 또한 체계적이며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로써 몇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위원회 부문 이것도 역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많은 시민들을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보육복지 전문가와 보육종사자 특히 안산시에서 조례에 보육교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등 안산시에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역할을 많이 강화시켜서 앞으로 안산시 보육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 위원회에서 잡아갈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모임을 하게 하는 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장애아, 영아, 야간보육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되고 있는, 또 앞으로 발전적 방향이라 볼 수 있는 직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규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순환근무 평가를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 사항을 강화시켰습니다.

시립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발전 방향이라든가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조이는 듯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기구인 보육위원회와 최근에 결성된 집행단위인 보육시설연합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보센터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업무를 확대시켰고 이 조항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정보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육지도

원의 수를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문제인데 이 조례안이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복지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회 균등과 분배의 원칙하에서 실시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개발 우선의 논리와 재정의 문제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 왔었고 이 빈 부분을 민간인들이 자리를 많이 메워 왔습니다.

안산의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민간시설의 2/3가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립은 1/3정도가 되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 시립 시설을 많이 확충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나 짓는데 한 12~13억이 들더라고요.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빠른 시일내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집 가까이에 시립시설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비싼 보육료를 내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질이 낮은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이나 공립보육시설이 수행하는 일이 다르지 않고 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을 지원해서 지금 중대하고 있는 안산의 보육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립어린이집의 아동과 민간 시설의 아동이 안산시에 같이 살고 있다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혜택이 안돌아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방과후 방치 되기 쉬운 초등학생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울산시 보육조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사업에 대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향후 안산시 보육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시작의 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쓸모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공청회와 앞으로 있을 위원회 그리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고치는 재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닦고 다듬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든지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善浩 여러분들의 양해속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장훈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신 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찬교수님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임희규교수님 안산전문대 평생교육원 원장 이십니다.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제한시간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안전의 범위내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지대학교 김연명교수께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지대학교 김연명교수 반갑습니다.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김연명입니다. 거기 유인물에는 현명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연명이 맞습니다.

먼저 초청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부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표준화를 만들어 갖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 거의 수정되지 않고 통과되는 것이 관례인데 안산시 의회에서 아동보육문제를 갖고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성의가 담긴 보육조례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를 만들기 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육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인천, 부천, 울산에 이어서 네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구성된 것이 한 2백 몇 개 되고 그런데 아직도 4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밖에 보육에 관한 조례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정도 수준에서 안산시 의회는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육조례에 대한 논평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아동보육에 관한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보육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경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보육사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했고 다른 어떤 사회복지 사업보다도 아동보육사업은 팽창속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빠릅니다.

투여되는 예산도 엄청나고 아동복지사업 말고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이런 분야에 비해서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하 거의 전 정치권 그 다음에 관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급속도로 팽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

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와서 아마 한 4.5년후까지 현재 정부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보육을 필요로 하는 거의 대다수의 아동이 아마 보육시설에 수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확충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보육시설에 아동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시설에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라는 보호와 교육의 질적인 내용 문제가 서서히 부각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선진국 사례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설 양적 확충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고 그것이 어느정도 충족된 다음에 교육내용 문제를 갖고 상당히 사회적 쟁점이 됐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 팽창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작년부터 보육에 대한 질적 논의 내용이 같이 부상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대개 선후적으로 문제가 해결 됐었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같이 혼합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조례가 인천이나 부천 같은 경우 다른 지역도 대개 보육의 양적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왔었고 보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산시 보육조례 같은 경우도 보육의 질적 측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90년대 들어와서 보육사업이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보육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보육조례를 제정하게 된 필요성은 첫번째로 해당지역

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거나 예를 들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제 탁아라든지 계절적 탁아라든지 혹은 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중산층들이 거주하는 지역과는 탁아욕구나 탁아형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조례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해당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모법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정책들을 지역단위에서 내실화 하기 위한 차원 2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그것 갖고는 불충분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할 때 보육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4개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을 보면 주로 후자의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해당지역의 특수한 욕구라는 것은 대개 우리 사회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라든지 혹은 상당한 공단밀집지역일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해 왔습니다.

안산시 경우도 후자의 측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을 좀더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여러분들 다 사업할 때 갖고 계시는 보육사업지침 이런 4가지 메카니즘을 통해 갖고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을 중앙정부가 다 해 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각 지역 단위에서 할 일을 중앙정부가 자세히 통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필

요로 하는 업무들, 예를들면 사회보험 같은 업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부 다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고 아동보육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대부분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하고 역사적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중앙정부가 먼저 서고 나중에 지방 사회가 형성이 된 케이스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가 먼저 형성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나중에 국가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굉장히 강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중앙정부가 있고 중앙 정부에서 세세한 법률을 정한다 하더라도 자세한 규정을 모든 지침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혁점이 있기 마련이고 간혹 가다가 통일적인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지역단위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혹은 지역에 맞는 보육형태를 취할려고 할 때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 혹은 좋은 것을 가로막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처음으로 시도한 최초의 선례였는데 그때 시의회에서 논란이 된 것이 뭐였느냐 하면 규정에 없다라는 거에요.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겠다. 시의원들이 민간보육시설 지원해 달라고 얘기 했더니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에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중앙 정부차원에서 이런 지침을 통해서 모든 걸 규제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고 보통 사회복지사업은 영어 표현으로 휴먼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간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텔레비전 팔고 냉장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은 거의 다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융통성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직성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그동안 유럽에서 나온 경험이기 때문에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는 대인 서비스쪽 분야에서는 가능하면 지방분권, 융통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육조례가 지역단위에서 제정될 필요성이 있고 다음으로는 현행 영유아보육법률 및 하위 법령,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많이 규정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보육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방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보육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적인데 지금 많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조차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률규정이 미비한 점 같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국공립 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위탁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기업체로 비교하면 일종의 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시설의 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기관의 보육의 질이라든지 수준, 아동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는 시설운영전반, 아동, 학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첨예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보육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때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어떤 형식이었느냐 하면 제가 담당공무원이다 그러면 조례규정에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하나 불러 갖고 당신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보육시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3,000만원 내고 위탁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민주성이란지, 투명성, 시설장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서 소위 보육시설과 관의 유착이 나타나고 거기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기관에서 아동보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사례도 많이 발견된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절차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충분히 수렴을 해야지만이 시설운영의 질을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국고와 지방비에 대한 민간 보육시설 지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법률규정에는 자세한 규정을 찾아 볼 수가 없고 예를들어 내가 담당공무원이다 그러면 자세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법적 하자가 없을 이런 상황도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미비한 법률규정을 보완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실히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방자치법

135조 2항을 보면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료의 권한이 굉장히 센 사회중의 하나인데 일본과 비교가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낙 중앙정부의 강한 권한이 모든 사회를 다 움직여 온 전통을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도 많이 나와 계시지만 실제로 시의회 의원이 되셨으면서도 자기가 “아, 내 의견이 정책적으로 시 정책에 반영됐고 시의회 모자란 부분을 통제할 수 있었다”라는 경험을 가진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료의 권한이라는 것이 관료의 권한을 행사할 때 정당성과 민주성만 확보되면 그것은 탓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서는 관료의 권한이라는 것이 전혀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가 정당성이라든지 투명성, 민주성이 확보 안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결국은 조례로 관료의 권한 행사가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와 민주화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드렸고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보육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의 조례보다 매우 충실하고 보육사업 운영에서 주민참여를, 물론 간접참여이기는 합니다만

강화시킨 매우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기 저기 검토를 하고 관련된 조항을 집어 넣다 보니까 너무 조항이 많아서 조례를 이해하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징을 한 4가지만 살펴보면 보육위원회 구성방식과 역할에서 상당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굉장히 눈에 띄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려고 한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조례가 특히 이 조항이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여기서 제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중요한 선례로 전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 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민감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사실상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보육프로그램 명문화 한 점도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한 5 가지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조례를 볼 때 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직영시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위탁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직영시설이라고 할 때는 현행 영유아보육사업법이나 관련 지침을 보면 시청이라든지 그런데 서 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시청내

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것을 시직영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엄격한 의미에서 직영시설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종사자들이 공무원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시설이라고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시가 운영을 하고 해당 직원도 공무원인 경우라는 것을 직영시설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학문적인 용어로 쓸 때도 직영시설은 보통 그런 의미로 씁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전부 직영시설화 하겠다고 정책안을 들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하도 반발이 심해서 철회되기는 했는데 그때도 서울시 안의 핵심은 현행 국공립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직영시설이라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서 나타난 것은 보육교사를 공채로 해서 시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직영시설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것하고, 민간시설은 시설장이 갖고 있는 거죠.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고 민간시설장이 갖고 있는 차이외에는 직영시설하고 위탁시설하고 별차이점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육교사를 공채를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시설에 관계하고 계신분들일텐데 토론의 장이니까 자유롭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끔마다 언론에서 불거져 나오는 횡령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시설장이 재량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를 통해 갖고 할 수 있다면 제어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적고 소규모 단위이기 때문에 교사 임명권을 보육시설장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보육교사들이 보육시설장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동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혹은 보육시설에 대한 헌신성이라고 치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틀립니다만 아직은 보육시설 같이 소규모 기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설장의 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명권은 시설장이 상당부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민간의 창의성이라든지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이 시설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철저한 감사가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대로만 해도 사실상 시설장이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은 조례대로 하면 거의 불가능한, 시의원하고 공무원하고 검은 커넥션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정도로 투명성이 보장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까지 필요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탁시설의 선정기준처럼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명문화 해야 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립보육시설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고 위탁자가 선정되는 경우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서 시설과 개인이 성실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조항은 13조 1항과 5항이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시의 인건비 보조와 교재 교구비 지원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정히 표현하자면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아동보육료 받아 갖고 비지니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냉정하게 보면 사실상 그런 측면도 있죠.

아동보육료 받아 갖고 아동보육하고 자기는 월급받고 하면 비지니스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보육사업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되면 국고지원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하면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상위 법률에 해당이 되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전반을 규정하는 총체적인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인데 그법에 영유아보육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비지니스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동보육사업이라는 것은 TV, 냉장고 파는 장사와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스를 적용해도 왜 민간인이 하는 시설에 국고보조를 하느냐라는 논리는 굉장히 무리한 논리가 될 수 있

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인이든 국공립보육사업이든간에 사회복지사업에 의거해서 공공복지사업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지로 정부에서 가끔 지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천시라든지 혹은 몇몇 시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도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라는 시각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자선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근거는 아동보육료는 아시다시피 공공의 통제가 가해 집니다. TV, 냉장고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지는 않죠? 그것은 완전히 비즈니스 때문에 통제를 안합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보육단가를 정하고 표준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들이 자율적으로 수납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아동보육하고 돈 버는 전데 돈 버는 것을 국가가 가격 규제를 한다는 것 이것은 시장논리에 맞지를 않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아동보육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보육단가를 통제한다는 거죠.

TV와 냉장고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이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표준보육단가를 정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정부의 표준보육단가가 사실상 시설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합의된 지적인데 사실상 민간보육 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

문에 문닫는 보육시설도 많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는 것은 복지사업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사업은 장사해서 자기 이익 챙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동을 보육하는 사회적 재생산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비즈니스 사업과 동일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세번째로 보육위원회 위원구성과 역할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주민참여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자세한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3조 6항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규명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한 자가 누구인지 앞에 1.2.3.4는 다 주민대표인데 어떤 분을 추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아예 1.2.3.4 번의 대표들을 절반은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절반은 시장이 위촉하는, 부천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슷한 형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사회복지 육아교육 전문가 중에서 일부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게 저는 민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라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육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쪽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항은 보육시설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보육사업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업인데 보육위원회 전부를 이해관계 당사자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의 양적 확충화가 어느정도 발전되면 그 다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보육의 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고 보육의 질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법에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는 차원밖에 안되는데 오히려 할 바에는 안산시에서 모범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는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에 부설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대개 보육센터장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나 이런 사람을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바른 기능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보육정보센터를 아예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정을 해서, 독립된 기관을 설정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된 기관을 설정해 가지고 말 그대로 안산시 보육에 관한 모든 것을 주로 기능은 조사연구기능하고 개별시설에 대한 서비스기능이 되겠는데 이 기능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를 대폭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보육센타의 장이 또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한 경험 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석사학위 정도는 마치고 이런 분이 장으로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대충 어디서 관계되는 일을 하다가 한집으로 생각되어서 보육센타장으로 가 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많은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육센타에 관한 규정에서 센타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치될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시설경험을 가진 인원들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안산시에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강화된 규정을 설정을 하면 굉장히 과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학도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보육센타를 운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타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보육교사 규정에 의거 한다고 했는데 19조에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의의를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결정이 돼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보육사업기준에 뒤에 부록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직원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확보하기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여기다 안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 최소한 석사학위를 가진 연구경력도 있는 분을 모셔올려고 할 때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대로 할려고 그러면 아무도 올 분이 안계십니다.

이 조항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수요조사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던데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보육수요조사는 보육정보센타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가지 표현상에 전담 보육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3조에 전담 보육시설이란 말을 정확히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아 보육시설 혹은 영아 전담 보육시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장애아나 영아라는 말이 빠지면 전담 보육시설이란 말은 용어의 정확성이 전혀 확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욕심이긴 하는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은 뜻입니다.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같이 통합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장애인복지 기본원칙인데 장애인 전담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분리교육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고 저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같은 사정에서 장애인들을 통합교육 시킨다는 게 정서적으로 너무 어렵고 다른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은 못합니다마는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같이 분리 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 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조에 보면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예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바뀌기 전 조항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이 규정을 집어 넣으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료를 자율화 시킨다고 해서 마구 보육료를 올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표준보육단가에서 150/100을 초과할 때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보육단가를 자율화 시킨다고 해도 시설장이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유치원과의 경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8조 이것은 제가 들어간 의도를 정확히 몰라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모법과도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몇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을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善浩 교수님, 공청회가 끝난 후에 제가 다시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연명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진변호사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 이찬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고 옆에 계신 김연명선생님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런 정도의 경험밖에 없고 깊이있는 논의는 김연명교수님이하신 발췌의 내용으로 저는 부문을 중심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조례에 대한 의견 개진했던 것을 중심으로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육위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인 안산시하고 안산시 지방보육위원회와의 관계 그리고 또 시의회와의 관계인데 이것은 보육위원회가 시의회의 통제를 받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유아 보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서 독립된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독립된 일종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 보육조례안에 보육위원회 설치근거에 관한 규정을 둔다는 것이 체제상 적절한 것인가에 기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이 나오는데 위원회가 원래는 운영설치나 운영규정이라는 형태로 이거를 규정하고 시의회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자치법규로써 작용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산시 지방보육위원회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해서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하시고 하나의 자치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육조례에서는 적어도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서 정해진 그 범위내에서 위임 또는 거기서 자치적으로 재량을 넘겨준 그 한도에서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대체로 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전환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장에 11조 제4항이 좀 문제

가 된 것 같은데 “수탁된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재직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원장은 시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공립시설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에서 아마 시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에 의문이 드는데 복리시설의 원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하는 일종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공립시설의 원장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제5장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5장에 있는 각 조문별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이 사실은 보육문제 안산시 의회에서 가장 큰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 아닌가 21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견은 별도의 규정을 넣기로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상 이 규정이 거의 동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마는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및 교부에 대해서 최저원을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특히 2항 및 6항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에 매년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예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위규정에 위배돼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시에서 개진하셨는데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 4호에 보면 비용의 지원에 관해서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보조지침이라는 법규명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제2조에 보면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형편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아울러 본다면 2항 내지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들은 상위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소위 자치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제 의견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조 5항에 별도 규정이 필요 없다는 그런 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한을 두고 있어서 보충적인 의미에서 입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신고된지 6개월 후에 지원한다는 가이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거라는 의미에서 제안이 된 거라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보조금에 관해서 21조 6항에 “문서로 만들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동법시행령 12조를 근거로 별도 규정이 필요없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이 규정은 보조금 예산을 관리하는 법령 및 시행령 각 규정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중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정도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지방 기초단체인 안산시가 일정한 영·유아보육법 및 동시행령 상위법규로 조례보다 상위인 법령에 의해서 규정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적으로 국고행정을 하

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별도의 규정을 둬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기존의 법령 및 시행령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자치단체 내에서 초과되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근거기준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하는 일종의 법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2조에 부문을 넘어가면 1항에 대해 별다른 것은 없는데 결국은 이게 위임사무나, 자치사무나에 관한 똑같은 말씀을 드릴 내용인 것 같은데 별도 규정이 다 필요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재정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이 얼마정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원한 금액이 시행령에서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초과된 부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22조의 전체적인 내용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23조 역시 인건비 부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국비 및 도비지원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체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조에 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현재 보육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과연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건지 보육시설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개념상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24조 4호가 개념상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는 것도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조 1호, 2호는 작위가 아니라 허위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호, 2호는 규정에서 범 26조 3호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3호 부분이 문제인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반환명령에서 1호, 2호는 상위법령을 임용하는 기초로 자구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3호 부분이 새로운 근거규정이 되겠죠.

원래 조례를 상정한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보조금 교부 부분에 대한 자치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3호 부분은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조 같은 경우는 1호, 2호 같은 것을 영유아보육법 26조 1호, 2호를 준용하는 식으로, 준용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데 그에 덧붙여 가지고 3호 내용을 넣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6장에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에 관해서는 이것 또한 보육위원회의 권한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육위원회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16조에 보면 12세 미만까지는 지방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의 권한하고 기관과의 권한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데 뭐냐하면 지방보육위원회에서 법령상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이 조례로서 규정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떨지 상위법령하고 부딪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시면 기타 내용들은 제가 문제를 제기할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고 김연명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대체적으로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김연명선생님의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에 관한 것도 결국은 보육위원회의 운영규정하고 여기하고 조화롭게 연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한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善浩 이찬진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와동어린이집 원장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와동어린이집원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와동어린이집원장 이명자입니다.

우선 김연명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유아보육사업이 정말 복지사업으로써 비영리사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재생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있어서 정말 안산시 실정에 맞는 보육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저희들 한테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보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국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각종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또 보육료를 부담해야 되는 수혜자인 아동이나 보호자가 공히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속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서 보육활동의 질을 높여서 미래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장이 된다면 보육을 하고 있는 현장인으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이러한 것이 마련되기까지 애써

주신 분들한테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세부 항목별로는 두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보육조례안에 있어서 우선 목적 조항에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 안산시 보육위원회나 공립보육시설, 정보센터설치 또는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방과후 보육사업 확대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두셨는데 물론 이런 것을 정한다는 것이 안산시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에는 기여를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어떤 시선이 모아진다면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더 할 수가 있고 시에서 어떤 복지차원에서 아동들에게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각의 시설들이 정말 학부모들한테는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보육비의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속에서도 각각의 보육시설들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존립의 문제를 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립의 문제를 갖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조례로써 조항으로써 묶여져 가지고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은 정해진 법이나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상태라든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되는 사항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가장 최대한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연명교수님이 언급 하셨듯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라든가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융통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 있는 시설장님들이나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하는 일로 봐서는 파출부의 일보다도 더 못한 상황속에 있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2세 교육을 하고 앞으로 안산시의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만 보육조례가 현재 조항으로서 아까 여러 가지 조항을 보았을 때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조금은 무리가 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폭이 넓게 문을 열어 주고 어떤 시행규칙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품으로써 아동보육사업을 계속 불법적으로 악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동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야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시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받음으로써 현장에서 떠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비를 표준보육단가에도 전혀 못 미치게 민간이나 국립마찬가지로 표준보육단가에 못 미치게 받음으로써 학부모에게는 조금 어린이집을 찾는 문을 열어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아동들의 보육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시설 하나하나에 주는 지원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근거도 없이 하는 것 보다는 안산시에서 표준화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모델을 정하고 운영비

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동들을 맡게 한 학부모들의 평균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큼 지원을 해야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육위원회나 보육정보센타 등 각각의 기구들은 어떠한 활동들을 해 주어야만 하는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가 된 상태에서 조례로서 정해 줌으로써 앞으로 보육활동에 좀더 질 높은 보육활동으로 가는 조례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현장에서 의욕을 갖고 일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교사들에게 긍지와 힘을 줌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 조항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현장에 있는 사람과 지원을 해 주는 국가 아니면 법을 제정하는 의회라든가 머리를 맞대고 한꺼번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각 조항별로 보면 앞에서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조 조항에서 보육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육위원회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현재 보육위원회가 안산시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육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과연 이러한 일을 전부 다 해낼 수가 있는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보육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주 깊이 있는 결정 사항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여명의 보육 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20명 중 6명만 찬성을 해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참석인원도 보육위원들은 정말 안산시 보육의 전체적인 책임자라는 생각하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꼭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재적위원 2/3 참석에 찬성도 2/3가 되어야

어느정도 정족수에 걸맞는 의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조 조항에서 현재 수탁자가 아니면 시설장들이 자리만 이렇게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다 나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를 우려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보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산시의 보육을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 돈은 없지만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년의 문제가 상위법에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그보다 낮은 61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부디 문을 더 확장한다는 뜻에서 상위법과 같은 연령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겸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겸직을 함으로써 보육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시설장을 두고 재정지원을 아주 막대하게 해서 기여를 하고자 했을 때에도 겸직이라는 차원 때문에 못한다면 그것은 안산시로서는 손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여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굳이 금지사항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5항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김연명교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교사들의 혼선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하셨는데 물론 혼선성에 문제도 있겠지만 배치를 할 때에 각각의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는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하는 것이 조금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조 2항에 있어서 정보센터의 기능에 비해서 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이 조금은 미약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의 장이 됐을 때는 사명감도 우선 문제가 되겠지만 사명감과 함께 보육활동에 대한 많은 상식과 경험이 부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정도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시설에서 얼만큼 동안 봉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져야만 정보센터 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조의 보육정보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들은 가정복지과에 시설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센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보내주는 연락사항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22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이 10세 미만을 23% 정도로 봤을 때 1/4 을 차지하는 어린이가, 한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산시 시민의 1/4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명을 둔 가정에서는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 봄도 교육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님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보내기 보다는 가격이 싼 곳으로 보내야 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시루 같은데서 빡빡하게 인가도 되지 않은 곳에 돈이 싸기 때문에 보내는 입장은 생각할 때 보육을 하고 있는 사람

의 입장에서는 보육료만 해결이 된다면 이런 쪽에 문제는 발생이 안 되리라고 봐서 2명이나 그 이상의 자녀를 둔 분들에게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보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을 때 반액이든 얼마 정도의 차액을 두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애자를 둔 가정에서는 장애자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은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난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생업도 할 수 없고 그 아이를 따로 특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어떤 쪽으로 아동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영아문제에 있어서도 영아는 한 학급당 2세 미만은 5명을 교사가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육료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꼭 맡겨야지만 직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나이임에도 맡겨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첫아이나 둘째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직급이 낮아서 보수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육비가 비싸서 맡기지는 못하고 친정이나 아니면 시댁 아니면 어느 집에 맡겨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성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아에 대한 지원책도 있으면 좋겠고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방과후 학교라는 것이 처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생소한 느낌이 있고 방과후에 보낸다는 것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조차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목에다가 키를 걸고 다니면서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조차도 먹을 수 없는, 나가서 노는 것이 좋고 혼자 밥먹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놀고

오락실이나 이런 곳을 돌아 다니는 경우 그로 인해서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범행 같은 것을 저지르게 되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의 소지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방황하는데서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산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으로써의 기초가 되는 안산시 보육에 대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함께 주재 하셔서 각각의 문항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제가 보육에 대해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원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 위주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많은 참작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이명자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하신 시민들의 의견청취카드를 수거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휴식시간은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15時58分 會議中止)

(16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善浩 휴식시간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희 수정놀이방 원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수정놀이방원장 이옥희 안녕하십니까? 이옥희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떨렸는데 원장님�이 중간에 휴정을 해 주셔 가지고 마음을 가라 앉힐려고 하는데 계속 떨리네요.

저는 안산에서 영아전담 시설로 해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옥희입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보육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보육조례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써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김연명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 가지고 겹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빼고 또 이명자원장님도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정 토론자이기 때문에 민간시설 운영하면서 제가 안산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례와 관계된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육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그 다음에 조례안을 잠깐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가 볼 때 안산시에서 특별히 보육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12세 이하의 인구가 25% 그 다음에 20, 30대 즉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20~30대 인구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안산시 잠정적 아동복지의 수혜자로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건복지부 내에서 아동복지 요구대상 인구를 인구비례로 20%로 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5%에 이르는 아동복지 수요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산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공단배후로써 맞벌이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아동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육조례의 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두번째로는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사업 내에서 김연명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요자 부담원칙이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골격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사업은 국·공립시설 위주로 해서 법 조항이 제정, 개정되어 왔던 과정이

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 즉 국가를 매개하는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다 다양한 내용 이런 것들을 주민과 직접 연결해서 해야 한다고 할 때 또한 보육조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 민간부문의 확대를 위해서 국민연금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부문 민간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지만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이 있는 사람, 즉 돈 중심으로 해서 복지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올바르고 형평에 맞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민간이 공공성 부문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으면서 상당히 아동복지 자체가 일정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육시설 내적인 문제로써는 이번 가을에 가정복지파내에서 민간시설을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142개소중 132개소가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민간시설이 일정정도의 조건과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문제가 단순한 개별 시설장들의 양심과 그런 문제에 맡겨두면 많은 내용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 검토한 내용 중에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저는 안산시 아동복지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 구성 비율상 시의회나 행정단위 지자체 내에서 특별

한 관심과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번째로는 그런 기준하에서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민간이 공공성 부문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안산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개별아동에 대한 지원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조항이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들은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즉 시립에서는 지금 현재 아동보육료를 9만 8천원 받고 있고 민간은 14만 1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즉 똑같은 소득이 똑같은 아동일지라도 국공립이 가깝게 있으면 9만 8천원을 내고 다니고 민간이 가깝게 있으면 14만 1천원을 내고 다닙니다.

즉 안산시에 똑같이 거주하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정 정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아동에 대한 지원선을 시설이용과 관계없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동지원선의 확대가 보다 더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이명자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자녀 입소, 즉 엄마들 공단에 다녀서 월 60만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는데 60만원 벌면서 아이들 둘 맡기면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 둘을 맡긴 이외의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엄마가 고생하면서 다닐 수 없고 또 그러면 남편께서 반대하시고 그래서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자녀에 대한 보육료의 과중한 부담은 경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육아동의 질문제를

향상시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그 것은 시설장에게 시혜를 주는 것과 다르게 보육료교사의 재교육이나 보육교사의 인건비 제고 등을 통해서 보육의 질이 어느정도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시립은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월 받는 금액이 90에서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은 40만원에서 최대가 한 7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인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교사 인건비가 차이가 날 때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교사수급을 하는 문제나 민간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정도 제약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장들이 보육아동의 보육료를 받고 다 떼어먹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시설 운영을 하는데 어느정도 재정적인 압박과 문제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안산에는 올해에도 교사들의 재교육을 상당히 많이 확대해 주셨는데 보다 더 다르게 안산시에서 주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기타 좋은 질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실비로써 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인천에서는 3만 5천원의 재교육비를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재교육비를 보다 더 첨가를 해 주시면 민간이든 시립이든 보육아동의 질이 보다 더 높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명자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보육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또 보육정보센타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육위원회가 얼마만큼 이 내용을 담보하면서 그마만큼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가 검토 되

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는 작년도에 보육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멤버가 한 5명 정도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족수를 소집하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수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정계문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육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내지는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그 비중만큼은 어느정도 갖춰서 진행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조례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11조, 12조, 17조 2항과 관계되어져서 주로 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수탁자 다음 직영시설장 그리고 보육센터장 세분의 임기가 현재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 시설을 운영해 나가면서 그 시설에 대한 파악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이런 것을 알아 나가고 옮바르게 아동을 보육해 나가는 과정을 볼 때 1년 정도는 어느정도 아이들 내지 교사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2~3년 정도가 아동에게 정말로 자기가 추구하는 교육관 내에서 즉 사회사업관 내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2년 정도 활동했을 때 일정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3년 정도 임기가 연장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외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아동복지적 관점에 상당히 많은 부분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저

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선교원 같은 비인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비인가시설에서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영유아보육법상에 있는 어느 정도의 규모와 자격을 갖춘 교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육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선교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종교단체내에서 추천한 사람에 의해서 또 규모도 갖추지 않고 간식이나 주식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렴한 가격, 시립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즉 돈이 그만 큼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단체내에서 재단지원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보육상태가 질이 상당히 낮은, 즉 형편없는 차원에서 보육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은 민간인이나 시립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존립자체의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당해 시설에서는 14만 1천원을 받고 있는데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그런 곳에서 9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자기 소득 때문에 9만원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민간에서는 14만 1천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내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동의 보육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즉 악화가 양화를 부추기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시설에 대한 대비책을 갖지 않을 시에는 보육시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규제나 자격 갖출 것을 유도하는 방침이 행정기관이나 의회내에서 없는 이상 보육의 질이

어느정도로 담보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상 과태료는 조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위법으로 그것이 넣어져야 마땅하지만 법상에 없고 그것을 기다리기가 우리 안산시의 특수한 차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조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해서라도 비인가시설에 대한 어느정도 규제를 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아동 지원이나 민간의 지원선을 확대하다 보면 아동복지의 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온전히 다루어지질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94년 1월 14일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부분이 위임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안산시의 인구나 이런 것을 볼 때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계신 많은 시설장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고 이 이전에도 제안을 한번 드린 바 있거든요, 의원님들을 만나서.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의 숙원사업인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善浩 감사합니다. 이옥희 수정놀이방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사회국장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鄭得福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보육사업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육사업을 발전시키고자 안산시 보육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장훈의원님과 22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안산시 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

신 박선호위원장님과 그리고 전문토론 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김연명교수님과 이찬진변호사님 그리고 이명자원장님, 이옥희원장님 아울러 이종찬교수님 등 보육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안은 기존의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산 조례 제479호, 92.12.30)를 폐지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육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산시 보육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산시 보육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바, 본 조례안 규정중 관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충복하여 조례로 규정함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보육위원회내에 소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장애아 및 영아전담 시설자, 야간보육시설·모범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정부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수탁운영자에게 재정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종사자 관리는 별도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는 보조없이 운영이 가능한 금액이라 사료되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별 보육료가 시설로 지원되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치 않으며, 또한 각 보육시설에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교재교구비, 아동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로 근거로한 연장보육으로 영유아 보육관련법규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종사자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국가적으로 인정해야 할 문제점 임으로 중앙부처간의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되며, 조례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보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훈의원께서 다섯분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난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章勳議員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라고 할까 효과 위력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한번 정리해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출해 주신 의견들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마 그것은 안산의 보육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듯 합니다. 일단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토의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善浩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世極議員 보사환경위원회 노세극의원입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보육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고민했던 지적들도 있고 또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연명교수님께서 직영시설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별로 운영상에 차이점이 없다. 직영시설은 엄격한 의미에서 직영시설 종사자는 모두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추진한 적이 있고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로 집행부에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질의한 적이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또한 임명권에서의 문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운영상에 차이는 위탁이나 직영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항시 뭔가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현행대로 하는 경우 직영시설이 아닌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단지 민간위탁이 아닌 시장, 단체장이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을 임명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위탁시설과 의미가 없다고 할 때, 운영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다고 했을 때 위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까 이옥희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산에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현황표에 부분보다도 더 많은 아동들이 거기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레 짐작은 가나 실지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 시립시설 1개소, 민간시설연합회에 포함된 시설이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선교원은 한 5,6개소 있는 것을 보더라도 거기가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보육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서 조례상으로나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보자 그래서 20조에 모든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통제도 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서 제공도 해 주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단도 짜주고 하여간 네트워크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강제 규정하에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안산에서 모든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보육조례가 규정하지 않으면 일부분만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보육조례가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한 여기에 보면 시립시설이나 그러니까 위탁이나 직영시설에서는 30조 보면 특정 종교가 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넣었어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가서 찬송가 배우고 물론 부모님들이 종교인일 때 결국은 동의하에 할 수 있지만 단지 보육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보내 가지고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세번째로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보육교사들을 보면 상당히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고 아이들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한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사회적으로 조

기 교육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경우는 유치원 갔다 와서 학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에도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교육의 질도 높일겸 사교육비도 줄일겸 공립보육시설에도 이런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시에서 채용해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시간에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교재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시에서 임용해서 시행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조례에 명시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앞에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육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 앞으로 점차 공립보육시설의 영역으로 수용되어야 된다. 그쪽으로 점차 그런 역할이나 기능이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관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민간보육시설이 정하는 위치가 더 크거든요.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점점 공립쪽으로 공립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법인이나 단체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모범적으로 한다. 잘 되는데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10개소 시립보육시설이 있지만 점차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규

정을 두게 되면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외부 법인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는 부분대로 하는 것이 훨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나.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떤가 기존에 민간보육시설이 공립화 되거나 또는 공립시설 만들 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게 위탁권 이런 것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이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善浩 김연명 교수님 답변을 해주시죠.

○상지대학교 교수 김연명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노위원님께서 보육은 공공부분이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민간시설에 앞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위탁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더 할 나위 없고 그럴려면 안산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민간부분이 너무 커져 갖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유사한 표현을 빌리자면 의료부분에서 한의사들하고 약사들 밥그릇 싸움하는 거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민간부분이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부분이 없고 민간부분이 너무 커져 갖고 국가에서 통제를 못하게 된 것인데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유치원 보다는 민간유치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격통제도 안되고 천차만별이고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확보하셔 갖고 국공립보육시설 더 확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음에 직영시설하고 위탁시설하고 용어 혼동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도 계속 조례를 읽으면서 직영시설 그래 갖고 전부 다 맨처음에 공무원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고 그 래 갖고 굉장히 용어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쓸 까에 대해서는 부천 같은 경우는 그냥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다른데에도 조례내에서 직영시설하고 위탁시설하고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울산도 여기서 얘기하면 직영시설 비슷한 데가 있는데 직영시설이라는 용어를 썼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현재처럼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행 직영시설처럼 하는 것이 좋은건지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순수한 의미의 직영시설요. 공무원들이 다 교사하고 시설장 하는 경우도 운영만 잘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고 공무원이 되면 교사를 근로조건도 굉장히 나아지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회에서 일단 공무원화 된다는 것은 관료주의 내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때 국공립보육시설을 전부 직영시설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원칙은 찬성합니다만 현재에서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사이즈가 작은 시설에서는 시설장의 인품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부분에 자발성하고 혁신성을 살려주는 쪽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육시설이 공공사업인데 왜 자꾸 민간으로 줄려고 하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만한데 정부와 의회쪽은 예산과 행정 지원을 통해 갖고 보육성격이 공공성을 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을 공무원

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위탁자 선정은 굉장히 투명성을 보장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시설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살려주는 것이 물론 이렇게 할려면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덕성이라든지 혁신성에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나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직에 계신분들도 옛날보다 수준이 많이 나아진 것도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 계신분들의 자율적인 정화 능력, 자율적인 조직통제능력 이런 것이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계신분들이 많이 오셨을텐데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에 전제라는 것은 일단 민간부분의 도덕적인 능력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지 않으면 시나 이쪽에서 아무리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도 거짓말 한다는 것을 매년 해 보면 알거든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혁신성,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끔 행정부나 이런데서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이찬진 20조와 관련해서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시 당국 입장에서 이 내용이 저도 등록이 반드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법29조 1항, 2항의 규정이라든지 법12조 인가 취소권한 등등의 조항이 아마도 보육시

설이나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조항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보육정보센터에 과연 등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민간보육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해서 인가를 받은 일종의 사회복지법인 내지 그에 준하는 시설인데 또다시 보육정보센터라는 데다가 등록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뭘 산출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만 그것을 통제하신다고 하면 시정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시 업무 감독권 행사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회에서 수시 감사, 단속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김연명교수님이 말씀하신 공립보육으로 전환 운영이나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는 규모는 절대로 아닌 것 같고 국책사업으로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을 안산시 정도의 규모에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보육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어느 정도의 타협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안산시 재정이 다른데 보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질적 기능을 리드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보육 시설을 어차피 지방 공법인으로서 설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특수법인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특수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넓혀 가면 어차피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육시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급속도로 정책으로 전환이 된다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직영시설하고 민간위탁시설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직영시설이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일종의 공법인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관해서 임명에 관해서 직접 통제가 가능할 것이 아닌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임명권한이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 사실상 적용되는 정도의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면에서는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시설이라면 사실상 운영에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인사권에 관해서는 상식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아마 접근 하실 때 여기 안산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善浩 特수교육에 대한 말씀은 아무도 안해 주셨는데요.

○와동어린이집원장 이명자 特수교육 부분에는 굉장히 발전된 제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시설장들이 정말 맞벌이 여성을 위한 어떤 기관이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를 가졌을 때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출산교사에 대한 대치교사라든지 아니면 병가로 인해서 자신들이 휴가를 얻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대치교사가 시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각 어린이집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 저희한테는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특수교사가 배치됨으로써 아이들한테 가는 영향이라든가 또 교사들이 좀더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그것은 가기전에 우선적으로 대치교사에 대한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 범

위가 허용된다면 특수교사까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위탁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간이나 시립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이든 시립이든 관계없이 어떤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안정되고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본다면 공공사업의 공익성을 생각해서 보육사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8조 1항이 되겠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서 그냥 법인이 아니라 정말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일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를 하여서 헌신한 기여도가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대처될 수 있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민간시설이든 시립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교사라도 현재 여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군다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직위가 승진이 되거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다가도 어느때 순간적으로 자신들한테 회의가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없애는 차원에서 시립, 민간인 구분을 두지 않고 안산시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했고 또 어떤 기여도가 있고 나름대로 위탁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에게 수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여된다면 훨씬 더 앞으로 발전된 보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교기관 비인가에 대해서는 조례나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례로 묶어둔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안산시에 보육시설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율감시 체제같은 것이 활동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 시설들은 보호를 받고 감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

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높일 수도 없고 어떤 경우는 낮춰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들의 어려움도 알겸 자체적으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비인가 시설에 대한 것은 연합회 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시에서 이것을 제재하는 뒷받침이 되어진다면 다소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朴善浩 그러면 20조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노세극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世極議員 원래 과태료 조항도 부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앞에 위탁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등록사항을 의무화 시켜서 안했을 때도 일정의 제재가 가해지도 록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나중에 삭제했습니다만 어쨌든 종교기관에서 하는 선교원들이 시에서 인가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하고 뭔가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입안 부분들이 보호도 되고 또 이쪽에서 일정정도 내용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이런 것 뿐만아니라 선교원들까지 비인가 보육시설에 까지 전부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보육정보센터가 명실상부한 센터로써 기능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지대학교 교수 김연명 참고적으로 이변호사님 의견도 등록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유사한 예로 3~4년 전인가 장애인들을 동사무소에 전부 등록하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열

마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정부 통계는 한 100만 된다고 그리고 장애인들은 한 400만 된다고 그리고 숫자가 안잡히니까 정책을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장애인들을 전부 동사무소에 등록하라고 3~4년 지났는데 반발이 심했어요.

장애인들 등록해 가지고 뭐할려고 그러느냐, 또 통제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30만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 살 때 장애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보장구 지급한다든지 이것과 상황은 틀리지만 등록제 자체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보육시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몇 명이고 이 정도에서 더 나아진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센타에서.

보육정보센타는 예를들면 9시간 보육하는데 2시간은 어디에 할애되고 이런 식으로 해당지역의 보육에 관한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정보센타에 웬만한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들은 자발적인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보육정보센타가 말 그대로 지역의 센타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게 상당히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예를들면 가정복지과에서 시 전체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적고.

그런 의미에서 등록은 예를들면 뭘 등록할 것이냐 우리가 합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교사가 몇 명이고 그 교사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학교때 뭘 전공

을 했고 이런 기초통계들은 전부 다 보육정보센타로 보내야지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이 되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행정부나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정책으로 수정 변경하고 이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타는 절대로 감시차원이라든지 이런 의도가 아닐 것이고 적극적으로 등록에 각 개별적인 시설들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O변호사 이찬진 보충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광범위한 의미의 영유아보육법 시설인데 거기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일반적인 공동의 적용을 받는 것은 비영리 복지법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영유아보육시설로써 법인이 아닌 경우만 일종의 영유아보호법의 특례규정으로써 가정보육시설은 신고를 하면 되고 기타 부분은 인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종교단체에서 부설로 설치한 영유아보육시설이 대부분 비인가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본다고 하면 저희가 등록제라는 이런 개념을 그렇게 단순하게 본 차원이 아니라 원래 종교단체나 이쪽에서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할려면 일정한 엄격한 사회법상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제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인가로 남아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등록을 하라고 그러면 과연 어떨까 실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원래 영유아보육시설로써 운영을 할려고 하면 법에 보면 29조, 31조인가 보육시설로써 인가를 받아야 될 시설자와 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칙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문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영유아보육법 31조 위반으로 해서 형사입건된 예는 아마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위낙 공공사업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사특별법으로써 처리한다는 자체가 법 감정상에도 이해가 안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해서 안산시 전체 차원에서 통일적인 그런 보육정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원래는 법에도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벌금 또는 징역 1년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등록제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비인가 시설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알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보육시설 관계자 여러분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중복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대표로 한분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혜경씨께서 질문을 해 주시죠.

○시민 서혜경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조례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건의는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 왔거든요.

지금 유치원교육비가 무상으로 2005년부터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교육의 차이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게 향후 어린이집의 교육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보면서 금년에 유치원 교육비를 가지고 7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

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세금감면 조차에서까지 탈락이 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민간보육시설에 보내시는 분들은 어머니들이 저소득층이거나 맞벌이 부부이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의 세금감면 혜택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린이집이 유치원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통일적으로 돼서 같은 법령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상교육도 받고 세금감면도 받고 또 저희들이 모든 면에서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다음은 김정숙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입니다.

○시민 김정숙 안산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김정숙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되신 안산시의회 의원님들 또 김장훈의원님께서 주축이 돼서 안산시 보육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목적 자체가 안산시 공립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 국한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안산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또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보육에 관한 조례라고 봤을 때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라든지 또 장애아 및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안이라든지 또 아동 복지향 상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하고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학지도에 관한 것 이게 보육시설이라고 그랬을 때는 보육시설이면서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보육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 교육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학지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목적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3조에 있어서 보육위원회의 구성은 구성비율이라든지 선정기준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안산시 보육위원회가 분명히 있지만 그 보육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영유아보육법상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육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보육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달라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번째 2항 1에 있어서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하고 유아교육만 가지고 가능하나 보육이란 말이 왜 들어가지 않느냐. 보육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 유아원과 유치원이. 새마을 유아원이 변경된 배경은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 자체가 기능면에 있어서 보육+교육기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면 교육부로 가고 보육이라고 봤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서 폐지가 되고 다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육만은 아니더라 이거죠.

교육기능이 더 큰데 교육에 관한 것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학부모 그 다음에 입소아동 보호자들이 얼마만큼 구성비율을 가지며 또 그분들의 견해가 보육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 가는데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구성비율이라든지 선정기준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 십사하는 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1조 4항에 있어서 수탁된 법인이나 원장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취소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과실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이 직업관으로 볼 때 시설장으로 임용됐던 사람이 위탁이 취소됐다 그래서 법인이 잘못 운영을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시설장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11조 4항에 관한 문제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조 직영시설장 근무기간 및 평가도 시설장만 동일시설에 2년으로 있고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봤을 때 다른 기타 종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장은 바뀌면서 그러면 교사들은 그냥 있다고 봤을 때 과연 그 시설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3조 종사자 임용 및 연령에 대해서 임용은 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탁자 및 직영 시설장에게도 같이 종사자의 임용 권한이 위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위탁운영시설의 대표자는 61세를,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공무원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교육공무원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일반 공무원의 기준에 준하는 것보다는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공히 종사자나 대표나 할 것 없이 65세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년이 연장되면 물론 상

반된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교육하는 사람으로 보고 교육공무원의 정년 연령에 준해 주십사 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다음에 지도 감독에 있어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장학지도에 관한 것은 전혀 없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장학지도에 관한 것을 삽입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을 갖고 있고 정보센터에 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 21조 5항에 보육시설 자체를 어떤 비영리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본다고 볼 때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를 “수당비등 보조금은 설립인가 및 신고된지 6개월후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을 자꾸 넓혀 주어야 되는데 어떤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충 검토한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이 수정 보완될 수 있기를 의견 개진을 했고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분만 더 듣겠습니다.

우윤종 시립명휘어린이집 선생님이신가요?

○시민 우윤종 시립 명휘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는 우윤종입니다.

실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분들의 얘기는 아직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소리를 듣는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교사의 신분보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감을 하시는데 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이들도 행복하다. 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고 국가적으로 대우를 받았을 때 경력인정, 호봉책정 문제인데 다른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보육교사 2급도 있고 1급도 있는데 그분들이 기준에 유치원교사

자격증으로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 그것이 몇 년씩 되고 새로 시립어린이집에 왔을 경우 그 경력이 모두 무시되고 다시 1호봉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경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떨려가지고 갑자기…….

○委員長 朴善浩 천천히 하세요.

○시민 우윤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분보장이 되어야 되고 호봉책정에 있어서도 학력에 자격증과 보육교사 1급과 2급 호봉책정도 1급과 2급의 호봉이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력은 타 시군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안산시에서 적용을 해서 경력이 인정되어서 호봉에 가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신분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장훈위원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章勳委員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6번 개정된 부분인데 오늘 전문가들 얘기 듣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기 계신분들 안산시 보육사업이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의원들은 이런 자리를 만들고 공청회를 자주 열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 부탁 드립니다.

○委員長 朴善浩 다음은 김연명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상지대학교수 김연명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金章勳委員 변호사님, 판 의회하고 분위기 얘기 좀 해 주시죠.

○변호사 이찬진 서울시의회도 가 보고 국회 보사위에도 한번 가 봤는데 안산시의회 분위기가, 시의회는 처음인데 굉장히 진지하시고 그래서 앞날이 밝지 않을까,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관심이 상대적으로, 물론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일반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인데 인식을 못하는 부분인데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이나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전부 다 열의를 갖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한달전에 민변이라고 변호사 단체 모임에서 세미나를 했던 주제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됐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담아야 될 부분이 어느정도 인가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상당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고민을 아마 한 1.2주 이상은 고민을 하셨던 안이 아닌가, 최소한 집중적으로 2주 이상을 전력 투구했던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관계 전문가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보육관계자 및 시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점들이 많아 유익한 공청회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안산시의회의 보육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전 의원님들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며 오늘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보육조례안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時24分 閉會)

○參席者

保社環境委員長 朴善浩
 安山市議會議員 朴鍾遠
 安山市議會議員 金章勳
 安山市議會議員 金英雄
 安山市議會議員 盧世極
 安山市議會議員 邊炯寬
 安山市議會議員 韓萬植
 安山市議會議員 黃鎬明
 保健社會局長 鄭得福
 상지대학교수 김연명
 변호사 이찬진
 와동어린이집원장 이명자
 수정놀이방원장 이옥희